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CONSULTANTS



# TAX UPDATE 2020 / 2021

[WWW.CHLKCPA.COM](http://WWW.CHLKCPA.COM)

## EXCLUSION FROM INCOME: STIMULUS CHECK AND UNEMPLOYMENT BENEFIT

2020년에 받으신 경기부양지급 (Stimulus Check)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Stimulus Check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은 연방정부 세금보고에는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주정부에서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PENALTY ISSUE FOR NOT HAVING HEALTH INSURANCE IN 2020

2019년 1월 1일 부터, 납세자는 Health Insurance 가 없어도 연방정부에 Penalty 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California 주 정부의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 Health Insurance 가 없는 California 거주 납세자는 \$750 per Person (\$375 for Dependents)와 2.5% of Household Income in Excess of the Gross Income Filing Threshold 중 큰 금액이 Penalty 로 부과 됩니다.

##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RS LETTERS 6174, 6173 FOR CRYPTO TAXES)

1.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 는 IRS 에서 자산으로 규정하여 2019년부터 개인 세금 보고서, 가상화폐 처분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 여부 (Capital Gain or Loss) 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Roblox 와 V-Bucks 온라인 게임 Currencies 는 더이상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년에 자선단체에 기부하신 현금 (Cash Donation) 에 대해 조정소득 (AGI) 의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항목별 공제 (Itemize Deductions) 를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도 \$300 까지 소득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IDE SHARING, PART-TIME DELIVERY SERVICES (DOORDASH, GRUBHUB, AND ETC.), OR E-COMMERCE

Ride sharing (Uber or Lyft), or E-Commerce (Amazon, Youtube, etc) 을 통해 소득이 생긴 납세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관련 Auto Expenses 는 ① Standard Mileage Rate of 57.5 Cents per Mile in 2020 또는 ② 실제 발생한 auto 경비 (Business Percentage 적용) 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VEHICLES CREDIT

1. 2020년에 New Plug-In Electric Drive Vehicle을 구입하신 경우, 최소 \$2,500에서 최대 \$7,500까지 세액공제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용량 (Kilowatt-hours)에 따라 세액공제액 (Credit)이 결정됩니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액공제 (Credit)가 아닌 보상금 (Rebate)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최소 \$1,000 에서 최대 \$7,000까지, Low income인 경우 최대 \$2,500까지 추가 보상금 (Rebate)이 있습니다.

## RESIDENTIAL ENERGY EFFICIENT (SOLAR) PROPERTY CREDIT

태양열, 지열, 풍력을 이용하는 가정용 난방, 온열 시스템 등을 ① 2020년 1월 1일 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설치한 경우, 지불된 모든 비용의 26%까지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설치 했을 경우, 지불된 모든 비용의 22% 까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INCOME EXCLUSION OF CANCELLATION OF DEBT ON PRINCIPAL RESIDENCE

주거주지의 부채탕감에 대해 면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2020년 뿐만 아니라 2018년, 2019년 탕감에 대한 면세혜택도 수정보고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 DISCHARGED STUDENT LOANS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 이미 받은 융자금을 탕감 받았을 시, 학자금 융자 탕감액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CHANGES OF RETIREMENT PLAN BY CARES ACT

1. 2019년에는 70½세 이후 불입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부터는 70½세 이후에도 Traditional IRA 로 불입이 가능합니다.

2. 조기인출 벌금 유예 (Early Withdrawal Penalty Waiver)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59½ 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100,000까지 10% 벌금이 면제됩니다. 인출금은 소득세 신고시 선택 (Election) 을 통해 3년에 걸쳐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고 혹은, 인출한 해의 소득으로 한번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은퇴계정으로 다시 불입하시면 수정보고를 통해 소득으로 보고되어진 금액을 은퇴구좌간의 전환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부터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18세 미만이나 정신적, 신체적 자활할수 없는 아이) 후 1년안에 은퇴연금으로 부터 아이당 \$5,000 까지 조기 인출에 대해 10% 벌금이 면제됩니다.

3. 의무인출 규정 변경(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Changes)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70½세가 되는 납세자부터 의무인출 규정 연령이 기존 70½세 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의무인출 규정이 면제되었습니다.

## NET OPERATING LOSS (NOL)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발생한 손실(NOL) 은 5년 Carryback 이 가능하고 무제한 Carryover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소득을 상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에서 인정한 의료비용이 납세자의 조정소득 (AGI) 7.5% (2020년도) 이상일 때부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말 절세 계획 및 세무 감사 유의사항



##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직장에서 제공하는 Retirement Savings Plan (401(k), SEP IRA 등) 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가능한 불입 한도액은 401(k)의 경우 \$19,500 (50세 이상 \$26,000)이고,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은 \$57,000 입니다. 2021년의 경우 401(k)의 불입 한도액은 2020년과 동일하며, SEP IRA은 \$58,000 입니다.

##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1인당 \$6,000 (50세 이상 \$7,000)까지 IRA계정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2021년 4월 15일까지 불입해야 합니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며 조정 소득 (Conversion Income)의 제한은 없지만, 조정소득에 대한 세금 (그동안 Traditional IRA를 통해 받은 세금공제 혜택을 돌려주는 의미) 을 고려해야 합니다.

##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59½세 이전에 IRA 계정에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한 세금과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은퇴계좌로 전환 (Rollover)을 위해 인출한 금액을 60일 이내에 다른 계좌로 이전하지 않을 시에는 10%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IRA 가입자가 인출금을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에 사용한 경우, 일생에 처음 집을 구입시 사용한 경우 또는 대학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10% 벌과금에서 면제됩니다. 2020년에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Donor (기증자) 1인당 \$15,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5,000 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Gift Tax Return은 보고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누적 증여액 \$11,580,000 (Unified Exclusion Amount)(\$11,700,000, 2021년) 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으므로 증여를 결정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1인당 \$107,600, 부부인 경우 \$215,200까지 (2020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동안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시 해외계좌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 또는 실질적인 관리권한 (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2,921 (Inflation Adjusted for Penalties Assessed after January 15, 2017)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29,210 (Inflation Adjusted for Penalties Assessed after January 15, 2017)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합니다.

**연말 기준:** 미국 거주시 부부 \$100,000/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부부 \$400,000/Single \$200,000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부부 \$150,000/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부부 \$600,000/Single \$300,000

---

## PRINCIPAL RESIDENCE

---

소유한 주택에 최근 5년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택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

2019년에 70½ 세 가 된 납세자는 2020년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을 2020년 4월 1일 이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해 12월 31일 이전에 RMD 이상을 인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RMD 규정이 면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INVESTED DIVIDENDS

## CAPITAL GAIN (LONG-TERM)

## INVESTMENT INTEREST

## INSTALLMENT SALE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ate	Taxable Income Breakpoint			
	Single	부부(MFJ)	부부개별보고 (MFS)	외부모 (HOH)
0%	\$40,000	\$80,000	\$40,000	\$53,600
15%	\$441,450	\$496,600	\$248,300	\$469,050
20%	No Breakpoint			

조정 소득 (AGI)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발생한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 CALIFORNIA ABC TEST (AB 5 Ch. 19-296)

2020년 1월 1일 부터 California 에서, ABC test 를 통해 근로자를 직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의 세가지 ABC test 에 해당이 되면 근로자를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로 취급합니다.

- Ⓐ The worker is free from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hiring entit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work. (근로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시에서 자유 로워야 함)
- Ⓑ The worker performs work that is outside the usual course of the hiring entity's business (근로자 일의 특성이 고용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달라야 함)
- Ⓒ The worker is customarily engaged in an independently established trade, occupation, or business of the same nature as the work performed. (근로자가 수행 한 업무와 동일한 성격으로 독립적으로 설립 된 무역, 직업 또는 사업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2020년 주민발의안 22 (Proposition 22) 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Uber) 와 리프트(Lyft) 사업자 등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됩니다.

## NET OPERATING LOSS (NOL)

2018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NOL)의 100% 까지 소득을 상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손실은 다음해로 무제한 Carry-over (CA에서는 20년 Limit)가 가능합니다

## AUTOMOBILE EXPENSE

2020년도 표준 공제율은 Mile당 57.5¢로 적용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개인목적 및 사업목적으로 혼용하신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 비율만큼 경비가 처리되므로 사업용 Mileage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BAD DEBT, CASUALTY AND THEFT LOSS

외상 매출금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 도난 및 재난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SECTION 179 AND SPECIAL DEPRECIATION

2020년 부터 \$2,590,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1,040,00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되는 새 장비 혹은 중고 장비 구입시에도 100%까지 Bonus Depreciation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MEAL & ENTERTAINMENT

2018년 부터 Client Entertainment (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 에 대한 Deduction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고, Travel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됩니다. Clients와의 식사는 종전과 같이 50% 공제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Holiday parties, Company Picnics, and Other Occasional Employee Appreciation Events는 종전과 같이 100% 공제됩니다. 이벤트 진행시 행사비와 식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식사비 공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PENSION PLAN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SEARCH ACTIVITIES CREDIT

Startups 와 Small Businesses 는 Federal R&D Tax Credit 의 최대 \$1.25 million (or \$250,000 Each Year for up to Five Years) 까지 연간 Payroll Taxes 의 FICA 와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 SEXUAL HARRASSMENT TRAINING

Require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은 2021년 1월 1일까지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At least two hours of classroom or other “effective interactive training and education” regard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o all supervisory employees; and (평직원 이상의 직책은 최소 2시간 교육 의무)
- At least one hour classroom or other “effective interactive training and education” regard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o all non-supervisory employees. (평직원은 최소 1시간 교육 의무)

첫번째 교육을 마치면 매 2년마다 필요한 재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Nonsupervisory employees: Training must be provided within six months of hire (평직원은 고용시점부터 6개월내)
2. Supervisory Employees: Training must be provided within six months of the assumption of a supervisory position (관리직원은 관리직을 맡기 시작한 시점부터 6개월내)

다음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교육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www.dfeh.ca.gov/shpt/>

## CANNABIS ( FULL EXPENSE DEDUCTIONS ALLOWED IN CALIFORNIA STARTING IN 2020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California 에서는 Cannabis 관련 Ordinary and Necessary 사업 경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제외). 사업 경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가 아니어야 하며 (마약거래, 범죄 행위), 정부 조적이 개입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 INCOME TAX AUDIT 유의사항

##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현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감정사의 싸인이 포함된 서류가 세금 보고서 필요합니다.

##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구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구좌에서 개인 구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 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INCOME TAX AUDIT 유의사항

## FOREIGN GIFT

2020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16,388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 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Form 1099 Filing Requirement이 강화되어 Due Dates (2/1/2021 for 1099-MISC & NEC; 3/1/2021 for 1099-DIV, 1099-INT & 1099-R) 까지 IRS 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건당 \$50 ~ \$270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Form 1099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해야 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ed Check,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세금보고 자료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등)을 해당 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 Los Angeles Office #1 (Suite 480)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 Partners

Il sup (Tommy) Lee	(213) 639-6285	ext.717	tlee@chlkcpa.com
Ik Su (Justin) Kang	(213) 639-6296	ext.716	jkang@chlkcpa.com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	sykang@chlkcpa.com
Kyu J.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 Managers

Samantha Kang	(213) 550-2183	ext.712	samkang@chlkcpa.com
Changkwon Moon	(213) 550-2184	ext.720	ckmoon@chlkcpa.com
Amy Lee	(213) 639-6295	ext.719	amylee@chlkcpa.com

### Staffs

Haley Jeehea Ahn	(213) 481-5486	ext.722	hjahn@chlkcpa.com
In Joo Moon	(213) 550-2185	ext.724	ijmoon@chlkcpa.com
Jitaek (Jason) Kim	(213) 481-5474	ext.726	jason@chlkcpa.com
Sharon Cha	(213) 427-9595	ext.728	scha@chlkcpa.com
Erika Oh	(213) 550-2090	ext.725	erikaoh@chlkcpa.com
Donguk Kim	(213) 365-1700	ext.786	dkim@chlkcpa.com
Ashley han	(213) 550-2186	ext.723	ashley@chlkcpa.com
Junyong Jung	(213) 550-2091	ext.714	jjung@chlkcpa.com
Hyemin (Hannah) Kim	(213) 365-1700	ext.700	hannah@chlkcpa.com
Jihyun Kim	(213) 550-2238	ext.711	jhkim@chlkcpa.com
Frederick Kim	(213) 365-1700	ext.718	fkim@chlkcpa.com

### Advisors

Jung G. Choi (Inactive)	(213) 365-1700		jgbsbc@gmail.com
Sung Ha Hong (Inactive)	(213) 365-1700		sunghahongcpa@hotmail.com
Spencer S. Moon	(213) 365-1700		spencermooncpa@gmail.com
Jay Chung	(213) 365-1700		jaynnchung@gmail.com

## Los Angeles Office #2 (Suite 1080)

3435 WILSHIRE BLVD., SUITE 10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2-8001 F: (213) 382-9115

### Partner

Henry Kim	(213) 382-8001	ext.780	hkim@chlkcpa.com
-----------	----------------	---------	------------------

### Staffs

Emily Chung	(213) 382-8001	ext.781	echung@chlkcpa.com
Eunzu Chang	(213) 382-8001	ext.782	ezchang@chlkcpa.com

##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 Partner

Youngsun (Judy) Rufsvold	(310) 542-6373	ext.701	jko@chlkcpa.com
James M. Chung	(310) 542-6373		jchung@chlkcpa.com

### Staffs

Seo Won Choi	(310) 542-6373	ext.703	schoi@chlkcpa.com
Elly Lim	(310) 542-6373	ext.704	elim@chlkcpa.com

### Advisor

Hong Won Suh	(310) 542-6373	ext.705	
--------------	----------------	---------	--

